

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9.

발의자 : 설훈 · 김민기 · 김한정

김병관 · 김태년 · 백혜련

안민석 · 조정식 · 권칠승

정재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.

그런데 기본계획 등의 공표 및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.

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중 “시행하여야”를 “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본계획 등) ① ~ ④ (생략)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 <u>시행</u> 하여야 한다.	제5조(기본계획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</u> <u>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</u> <u>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-----.</u>
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⑥ (현행과 같음)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